

2025년

경찰관 직무집행법

(경찰, 청원경찰)

엠북 코리아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★ 경찰공무원 필수 교재
- ★ 법, 시행령, 별표 내용 모두 포함
- ★ 25분 완성!
- ★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

경찰관 직무집행법

[목차]

제1장 총칙(p3)

제2장 경찰관의 직무(p7)

제3장 경찰관의 장비 등의 사용(p20)

제4장 손실보상(p32)

제5장 보칙·벌칙(p42~54)

[약어]

- 청장들은 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
- 청장/시도청장들은 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, 시도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
- 심사위는 보상금심사위원회

[비고]

- 검은 글자는 법
- 보라색 글자는 시행령
- 초록색 글자는 최근 개정 내용

(Copyright) 공부혁명! 엠북(mbook.kr)

제1장 총칙

1. 목적(1조)

가)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
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
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

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

나)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행사, 남용 금지

2. 용어

가. 경찰관

- 경찰공무원만 해당

나. 경찰관서

- 경찰서, 지구대, 파출소, 출장소
- 지방해양경찰관서 포함

다. 구호대상자

- 수상한 행동이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

1)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/신체/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

2) 자살 시도자

3) 보호자가 없고 응급구호가 필요한 미아, 병자, 부상자

- 단, 본인이 구호 거절시 제외

라. 경찰장비

- 무기, 경찰장구, 경찰착용기록장치,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, 살수차, 감식기구, 해안 감시기구, 통신기기, 차량/선박/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 수행시 필요한 장치와 기구

마. 위해성 경찰장비

- 생명/신체에 위해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

바. 경찰장구

- 경찰관이 휴대해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, 포승, 경찰봉, 방패 등

사. 무기

- 생명/신체에 위해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, 소총, 도검 등

아. 경찰착용기록장치(2024년 7월 31일 시행)

-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해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/음성으로 기록하는 기록/기계 장치

자. 경찰청장등

- 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, 시도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, 경찰서장, 해양경찰서장

(Copyright) 공부혁명! 엠북(mbook.kr)

1. 직무의 범위

- 국민의 생명/신체, 재산 보호
- 범죄 예방/진압, 수사
- 범죄피해자 보호
- 경비, 주요 인사 경호, 대간첩/대테러 작전 수행
-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/작성, 배포
- 교통 단속, 교통 위해 방지
- 외국 정부기관, 국제기구와 국제협력
-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

2. 불심검문

가) 다음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

- 수상한 행동이나 주위 사정 합리적 판단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는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는 자
-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는 범죄행위를 안다고 인정되는 자

나) 정지시킨 곳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자에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시 질문하기 위해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 요구 가능

- 동행 요구받은 자는 거절 가능

다) 질문시 흥기 소지 여부 조사 가능

라) 질문/동행 요구시 신분증(경찰관
공무원증)을 제시하면서 소속/성명을 밝히고
목적/이유 설명

- 동행 요구시 동행 장소 밝힘

마) 동행한 자의 가족/친지 등에 동행한
경찰관 신분, 장소, 목적, 이유를 알리거나
본인이 즉시 연락할 기회 제공, 변호인 도움
받을 권리 있음 알림

바) 동행한 자를 6시간 초과해 경찰관서에